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7. 6. 21(수)
제 282 회 정례회

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양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

 **양주시의회**
Yangju City Council
【전문위원 최상열】

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세정과장)
- 제출일 : 2017년 5월 31일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 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면서 「지방세 기본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14474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이 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「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」에 이관하는 한편,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분법에 따른 기본조례 개정: 41조항 중 34조항 삭제, 7개조항 개정, 1개조항 신설
-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읍·면·동장, 소속공무원에게 위임근거 규정 마련(안 제3조)
- 자동차 이전·말소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수탁 및 위탁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 방법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채권자,납세자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양주시금고 예탁함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규정(안 제7조)

4. 기타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17 . 4 . 5 . ~ 2017 . 4 . 26 (22일간)

나) 예고결과 :

○ 부서협의

가) 협의기간 : 2017 . 3 . 24 . ~ 2017 . 4 . 2 (9일간)

나) 협의결과

-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-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사유

- 본 조례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「지방세기본법」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레이며
-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하면서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14474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됨에 따라,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임.

◁ 「지방세기본법」과 제정안의 분법 개요 ▷

「지방세기본법」	「지방세징수법」
총 칙	총 칙
납세의무	
부 과	
징 수	징 수
체납처분	체납처분
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	
납세자의 권리	
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	
법적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	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	
보 칙	

- (중전)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규정하였음.
- 그러나,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독립적인 규정이 없이 「국세징수법」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지방세관계법령의 법적 완결성 등 미흡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,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징수·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을 제정하여 체계를 정비함.

※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(전부개정안)와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(제정안) 개요

현 행	전부개정 (안)	제 정 (안)
「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	「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	「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」
제1장 총칙		
제1조(목적)	제1조(목적)	제1조(목적)
제2조(정의)	<삭제>	
제3조(적용)	제2조(법령과의 관계)	제2조(법령과의 관계)
제4조(세목)	<삭제>	
제5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)	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	
제5조의2(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)	제4조(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)	
제6조(조세시행에 관한 규칙)	제8조(시행규칙)	제4조(시행규칙)
제7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	<삭제>	
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	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	
제9조(보통우편 송달부)	<삭제>	
제2장 부과징수		
제10조(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)	<삭제>	
제11조(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)	<삭제>	
제12조(도세와 시세의 징수 순위)	<삭제>	
제16조(교부금전의 예탁)	제6조(교부금전의 예탁)	
제18조(시세의 수납)	<삭제>	
제20조(시세환급금의 통지 등)	<삭제>	
<신설>	제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	
부칙	부칙	부칙
제13조(미납세 등의 열람)		<삭제>
제14조(허가 등의 제한)		<삭제>
제15조(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)		<삭제>
제21조(징수유예 등의 신청)		<삭제>
제22조(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)		<삭제>
제23조(징수유예 등의 취소)		<삭제>
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		<삭제>
제25조(납세담보물의 보관)		<삭제>
제3장 체납처분		
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		<삭제>
제26조(등기·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)		<삭제>
제27조(조건부 채권의 압류)		<삭제>
제28조(시세확정전 보전압류)		<삭제>
제32조(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)		<삭제>
제33조(계속수입의 압류)		<삭제>
제34조(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)		제3조(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
제2절 처분		
제35조(과산신고에 따른 교부청구)		<삭제>
제36조(공매)		<삭제>
제37조(공매처분유보)		<삭제>
제38조(매분방법)		<삭제>
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 및 공고)		<삭제>
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		<삭제>
제40조(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)		<삭제>
제41조(조세채권의 신고)		<삭제>
제42조(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)		<삭제>
제43조(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)		<삭제>
제44조(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등)		<삭제>
제45조(지방세 우선권의 확보)		<삭제>
제46조(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)		<삭제>
제4장 보칙		<삭제>

나. 주요개정 내용

1) 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(안 제3조)

- 양주시에서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과 맞추어 자구조정 및 단서규정을 추가함.

※ 개정내용

현행조례	전부개정안
제5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) 시장은 시세의 부과 및 징수(이하 “부과징수”라 한다)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의 송달,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	제3조(부과·징수의 권한 위임 등) 양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와 시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(도세의 부과·징수로 한정한다)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(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·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※ 관련근거(지방세기본법)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·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(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2)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(안 제4조)

- 양주시 관할 자동차등록사무를 타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구를 조정함.

※ 개정내용

현행조례	전부개정안
제5조의2(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련 특례) ① 시장은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 이전·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본거지를 두는 자동차의·이전·말소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·신고 받은 관련서류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	제4조(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다른 시·군·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·등록면허세·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3) 서류 송달의 방법(안 제5조)

-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납세자에게 우편 및 전자송달 등 서류 전달에 관한 규정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항을 정비함.

※ 개정내용

현행조례	전부개정안
<p>제8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·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 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·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(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)을 받아야 하며,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통·리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·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통·리·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·리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·리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※ 관련근거(지방세기본법)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4) 교부금전의 예탁(안 제6조)

- 채권자, 납세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을 양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는 규정으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항을 정비함.

※ 개정내용

현행조례	전부개정안
<p>제16조(거부금전의 예탁)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</p>	<p>제6조(교부금전의 예탁) 시장은 채권자,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</p>

※ 관련근거(지방세기본법)

제143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에 따라 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5) 지방세심의위원회(안 제7조)

- 법 제147조에 따라 지방세 과세심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함.

※ 개정내용

현행조례	전부개정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.</p>

※ 관련근거(지방세기본법)

제14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**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**

1.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
 2.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
 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
 4.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
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,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6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체납·징수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,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